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4.

발의자 : 전현희 · 한준호 · 박균택
이정문 · 김승원 · 윤종군
박홍배 · 김민석 · 조승래
김영환 · 황정아 · 이기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,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, 언론 ·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, 고소 · 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 · 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(또는 단체)가 정치적,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,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(안 제70조제3항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3항 중 “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”를 “고소가
있어야”로, “없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0조(별 칙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<u>피해</u> <u>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</u> <u>반하여</u> 공소를 제기할 수 <u>없다.</u></p>	<p>제70조(별 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고소</u> <u>가 있어야 -----</u> ----- <u>있다.</u></p>